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2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조은희 · 이성권
김성원 · 박정하 · 김위상
신성범 · 김은혜 · 김용태
박충권 · 주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,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,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.

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필요함.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,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·공유재산의 무상대여·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·

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 및 제18조).

법률 제 호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”를 “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자원봉사단체”를 각각 “자원봉사단체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 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<u>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</u>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 유·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제16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사용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및</u> <u>한국자원봉사협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8조(<u>자원봉사단체</u> 에 대한 지 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자원봉사단체</u> 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제18조(<u>자원봉사단체 및 한국자</u> <u>원봉사협의회</u> 에 대한 지원) -- <u>자원봉사단체 및 한국자원봉사</u> <u>협의회</u> ----- ----- -----.